

대한민국정부



제18758호 2016. 5. 13.(금)

【조 약】

○조약제2290호(해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) 4

【대 통 령 령】

○대통령령제27166호(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 20

【총 리 령】

○총리령제1275호(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) 23

【부 령】

○농림축산식품부령제211호(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) 26

○외교부령제39호(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..... 27

【고 시】

○국민안전처고시제2016-45호(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) 31

○국민안전처고시제2016-46호(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일부개정)..... 32

○국민안전처고시제2016-47호(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일부개정)..... 33

○국민안전처고시제2016-48호(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) 33

○국민안전처고시제2016-49호(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) 34

○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-88호(한국수출<서울디지털>,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)..... 35

○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-89호(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) 36

○환경부고시제2016-89호(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실태점검 기준) 74

○환경부고시제2016-91호(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<전공학과와 경력>) 80

○여성가족부고시제2016-25호(청소년유해매체물)..... 81
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59호(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)..... 82
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0호(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) 91
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4호(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<경주용강1>) 166
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5호(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<익산부송1>) 167

(이면 계속)

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☎ 2100-3345, 2100-3346
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

○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-166호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11
○보건복지부공고제2016-322호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12
○보건복지부공고제2016-325호(모자보건법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재입법예고)	213
○고용노동부공고제2016-173호(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)	214
○해양수산부공고제2016-386호(어구관리법 제정<안> 입법예고)	228
○경찰청공고제2016-17호(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30
○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-10호(재산등록사항 공개)	230
○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-37호(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)	261
○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-38호(행정처분 공시송달)	261
○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-10호(공시송달)	262
○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-2호(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)	263
○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-3호(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)	263
○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-4호(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)	263

【지방자치단체】

○울산광역시고시제2016-70호(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<경고>)	264
○경기도고시제2016-5110호(안양천권역<지방> 하천기본계획<변경> 결정 등)	265
○괴산군고시제2016-53호(능촌 소하천 정비사업<제2공구>에 편입되는 토지세목)	272
○괴산군고시제2016-54호(능촌 소하천 정비사업<제3공구>에 편입되는 토지세목)	273
○인천광역시공고제2016-644호(환경건설팅회사 신규등록)	274
○경기도공고제2016-564호(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)	275
○경기도공고제2016-566호(측정대행업 등록)	275
○경기도공고제2016-569호(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)	275
○(광주)동구공고제2016-420호(월남 도시개발사업<2단계> 공사완료<부분준공>)	276

【기 타】

○압수물환부공고(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)	276
○압수물환부공고(울산지방검찰청)	277
○결정(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)	277
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6호(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<청주산남2-1>)	167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7호(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<안산군자13>)	168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8호(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<인천연수1>)	168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6-269호(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<일산문촌9>)	169
○해양수산부고시제2016-61호(동해·북호항 재창조사업<1단계> 사업계획 수립 변경)	169
○해양수산부고시제2016-62호(동해·북호항 재창조사업<1단계> 사업구역 지정 변경)	171
○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-7호(도로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,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)	172
○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-24호(국적상실)	173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64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)	173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65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4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66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4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67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5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68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)	175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69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6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7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6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71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7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72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7
○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-73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	178
○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180호(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<변경>)	178
○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176호(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)	182
○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170호(2016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 실시계획)	197
○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171호(도로구역 결정<변경>)	202
○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172호(접도구역 지정)	203
○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-219호(하천점용 연장허가)	204
○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-95호(하천수사용 허가)	204
○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-125호(하천수사용 허가)	204
○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-126호(하천공사<하천수사용> 실시계획인가)	205
○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-42호(홍수예보지점 기준수위<주의보·경보> 변경)	206
○부안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-1호(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)	206

【공 고】

○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-14호(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<안> 입법예고)	207
○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-225호(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08
○행정자치부공고제2016-139호(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09
○행정자치부공고제2016-140호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10
○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-135호(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<안> 입법예고)	210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조직은행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 등이 있는 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회수·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,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,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,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조직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조직은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조직 폐기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조직을 폐기처분하기 전에 격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1호
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5월 13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
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것

제16조 중 “10밀리암페어·분”을 “8밀리암페어·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,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각각 “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경과조치)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3조제1항 본문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주당 최대 동작 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·분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, 방사선 구역 표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,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·분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. <농림축산식품부 제공>